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http://www.daedeok.go.kr

제2022-83호 2022. 12. 2.(금)

차 례

고 시(2)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고시 제2022-99호)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2-100호) ----- 2

공 고(5)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2-1108호) … 3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2-1120호) -----5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고(공고 제2022-1121호) …… 7

공 암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2-9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허가번호: 제2022-5호
- 2. 허가연월일: 2022. 11. 24.
- 3. 점용·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중문공업사(박**)
 -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번길 **
- 4. 점용·사용의 목적
 - 가. (목적) 진출입로, 주차장, 재활용품 적재
- 5. 점용·사용 장소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02
 - 나. (면적) 287 m²
- 6. 점용·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2.11.24. ~ 2027.12.31.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2-10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O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 <u>주</u> 소 부 여 사 유	도로명 부여시유 (도로명 고시일)
오정동 308-13	오정로77번길 63	2022. 12. 2.	건물신축	오정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7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비래동 120-11	비래동로23번길 42	2022. 12. 2.	건물신축	비래동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2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비래동 391-1	비래골길 58-30	2022. 12. 2.	건물신축	비래 골 자연마을 명 반영
비래동 391-2, -4	비래골길 58-32	2022. 12. 2.	건물신축	비래 골 자연마을 명 반영
미호동 203-1	대청로526번길 84	2022. 12. 2.	건물신축	대청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5,2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덕암동 65-16	덕암로125번안길 98	2022. 12. 2.	건물신축	덕암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2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의 안쪽길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1108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공고기간: 2022. 12. 2. ~ 2022. 12. 16.(15일간)
-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제37조제7항
-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 가.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직권말소
 - 나. 대상업소: 대덕구 장동로 271-2 (장동) / 내장동식당 (이○연)
 -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 내장동식당(사업자등록 폐업일 2000. 3. 31.)

4.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6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위생관리팀 ☎(042)608 6902.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1115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체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무연고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성	성별	생년월일 (연령)	등록기준지	발견일시	발견(사망)장소	사망	처 리
			주민등록상주소	(사망일시)	(.5,5	원인	방 법
심명섭	남	58.12.12 (64)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27번길 26의4 대전 대덕구 계족로664번길 27, 104동 917호(법동, 한마음아파트)	'22.11.10.(목) 15:27경 ['22.10.31.(수) 22:00경추정]	대전 대덕구 계족로664번길 27, 104동 917호(법동, 한마음아파트)	미상	화 후 안 봉

2. 발생상황

- 2022. 11. 10.(목) 15:27경에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됨.
- 3. 봉안기간: 5년(2022. 11. 23. ~ 2027. 11. 22.)
- 4. 봉안장소: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대전추모공원(1관1층-석류6087)
- 5. 공고기간: 2022. 12. 2. ~ 2023. 1. 2.
- 6. 연 락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과(☎ 042-608-6775).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1120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미 시정으로 인하여 이행강 제금 재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제목: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2022년도 재부과건)
- 2. 공고기간: 2022. 12. 2. ~ 2022. 12. 16.(14일간)
- 3. 공고장소: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 4. 송달대상: 붙임 참조
- 5. 송달내용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해 자진정비토록 시정요구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같은 법 제8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대상에 해당하여 사전통 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대덕구청 주택정책과(☎042-608-5143)로 연락 바랍니다.

아울러, 공시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붙임】공시송달 대상

연번	소유자	위반건축물 소재지	위반내용	구조	위반면적 (m²)	용도	발생 년도	비고
1	0 *□	비래동 141-1	무단증축	경량철골구조	8.25	창고	1996	폐문 부재
2	 김*자	신탄진동	무단증축	철파이프/천막	4.68	포장마차	1992	폐문 부재
	박*진	143-31 신탄진동		철파이프/천막 철파이프/천막	2.97 10.50	포장마차 음식점	2001 1995	무색 폐문
3	ㅋ**건 이*모	143-31	무단증축		5.60	음식점	1995	비 부재
	•			철파이프구조	21.0	일반음식점	2005	<u></u> 폐문
4	장*진	중리동 411-9	무단증축	조립식패널구조	13.2	창고	1992	부재
5	정*진	송촌동 565-29	무단증축	시멘트블럭구조	16.2	근린생활시 설	1993	폐문 부재
6	유*준	읍내동 343-12	무단증축	철파이프구조	32.50	일반음식점	1999	폐문 부재
7	육*순	송촌동 465-9	무단증축	조립식패널구조	7.2	창고	2006	폐문 부재
8	이*주	중리동 500-11	무단증축	조립식패널구조	10.80	주택	2002	폐문 부재
				조립식패널구조	6.60	주택(창고)	1997년 이전	
9	김*란	비래동 137-35	무단증축	경량철골구조	1.91	주택(발코니)	1997년 이전	폐문 부재
				조립식패널구조	6.88	주택(창고)	1997년 이전	
10	오*엽	신탄진 동 120-12	무단증축	철파이프구조	14.22	창고	2014	폐문 부재
11	길*환	신탄진동 174-14	무단증축	시멘트블럭구조	19.15	주택	1991	폐문 부재
12	임*영	중리동 241-7	무단증축	조립식패널구조	19.6	주택	2000	폐문 부재
13	김*숙	숙 비래동 137-37	무단증축	조립식패널구조	9.31	주택(창고)	1999	폐문
13		11116 131-31	1607	조립식패널구조	4.30	주택(창고)	1999	부재
14	김*엽	비래동140-1	무단증축	컨테이너구조	6.25	창고	2005	폐문 부재
15	최*영	중리동 119-6	무단증축	조립식패널구조	8.51	소매점	1995	폐문 부재
16	이*연	비래동 555-7	무단증축	시멘트블럭구조	1.5	음식점	1999	폐문 부재
17	이*빈	신탄진동 120-12	무단증축	조립식패널구조	28.74	창고	2014	폐문 부재
18	이*숙 한*수	대화동 35-411	무단증축	시멘트블럭구조	48.6	주택	2009	폐문 부재
19	김*희	평촌동 535-1	무단증축	일반철골구조	3	계단	2013	폐문 부재
20	송*자	연축동 200-4	무단증축	조립식패널구조	9	창고	2006	폐문 부재
21	박*훈	대화동 568-14	무단증축	컨테이너구조	18	주택	2020	폐문 부재
22	황*숙	중리동 239-33	무단증축	철파이프구조	3.6	주택	2009	폐문 부재
23	박*식	중리동 254-27	무단증축	철파이프구조 조립식패널구조	14.06 9.9	주택 주택	2011 2001	폐문 부재
24	유*상	비래동	무단증축	조립식패널구조	4.8	창고	2001	폐문
2 4	πο	137-5	구근ㅇ푹	조립식패널구조	9.6	창고	2001	부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1121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제목: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 2.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 3. 공고기간: 2022. 12. 2. ~ 2022. 12. 31.(30일간)
-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변경등록내역		
	(대표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대덕구 제2013-01호	㈜대전공업사 (전준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86 (상서동)	기술인력 (정비·점검분야)	김민수 이해연	이해연 이우석

- ※ 최초등록일: 2013. 8. 1.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덕구 환경과(☎042-608-6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1140호

공유재산 대부 입찰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대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입찰 참가 대상자는 반드시 사전에 대부 재산의 현장 및 도시계획저촉, 행정상 제한사항 등 관련 공부 를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2동청사 임대점포 대부 입찰 공고
 - 나. 대부 대상 공유재산 표시
 - 1)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87(법동 192-1)
 - 2) 건축물: 지하1층 지상5층(철근콘크리트/슬래브)
 - 3) 대부 대상 점포

구 분	면적(m²)	용 도	대부기간	예정가격(원)	비고
지상1층	460.28	근린생활시설 (간이휴게음식점)	2023.02.01. ~ 2027.01.31.	124,601,000 (부가세 별도)	용도변경 불가

※ 1년간 대부료에 해당하는 예정금액으로 대부기간 중 최초 연도 대부료는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 입찰가로 결정되고, 2차 연도 기간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산식에 의거 산출·부과됩니다.

<2차 연도 이후의 대부료 산정 기준>

(당해연도의 재산가액×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연도의 대부료)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다.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 시작 일시	마감 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비고
2022.12.05.(월)	2022.12.14.(수)	2022.12.15.(목)	대덕구 토지정보과	
[10:00]	[16:00]	[10: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참가방법

-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 하『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 나. 입찰참가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를 온비드에 등록한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다. 입찰 진행 시 온비드시스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본 입찰은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전자입찰과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콜센터 1588-5321)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3. 입찰가격

예정가격 기준으로 최고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금액은 1년간의 대부료로 자동 결정되며, 대부료 납부는 대부 시작일 이전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가. 온비드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 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 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한국 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의 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는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입찰서는 입찰 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 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 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 시작 시간 및 입찰 마감 시간 등 입찰 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라.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동일 물건에 대해 서 동일인이 1회에 한해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처리

-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본인이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의 10% 이상을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로 전액을 일시에(분할납부 불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 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아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다. 입찰결과 무효 또는 낙찰자 이외의 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라.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하며,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번(가상계좌번호 발생)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로 인하여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는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됩니다.
-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구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사.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임대료의 일부로 대체합니다.
 -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개인 및 법인회원 온비드 이용 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되는 입찰 또는 입찰 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나.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효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다.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시 스템상(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다. 입찰 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진행내역] 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0. 낙찰자 제출서류

- 가.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나.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다.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 라.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 제출

11. 계약체결 및 대부료 납부에 관한 사항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 제출서류 등 필요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 나. 대부료 납부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일시불로 완납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공유재산 대부허가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12. 대부 조건: 붙임 대부 조건 참조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등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본 대부대상 재산의 현장 확인을 하여 대상 재산의 여건, 사용허가 조건을 반드시 숙지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대부 입찰공고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일 전에 정정공고 할수 있습니다.
- 라. 낙찰 및 계약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계약자가 권리의 양도, 양여, 대리운영이 적발되거나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이용자의 민원을 야기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 마. 낙찰자가 대부허가 기간 중에 스스로 대부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간 임대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바. 본 공고문과 입찰결과는 온비드(www.onbid.co.kr), 대덕구청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고되며, 공고내용이 상이할 경우 온비드 내용을 따릅니다.
-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센터 (1588-5321),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대덕구 토지정보과(042-608-530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유재산 대부 조건 1부. 끝.

[붙임]

공유재산 대부 조건

제 1 조 (대부용도) 재산의 사용 용도는 입찰공고문의 용도로 한다.

제 2 조 (대부기간) 대부기간은 입찰공고문의 기간으로 한다.

제 3 조 (대부료) 대부금액은 최고낙찰가액으로 하며 낙찰된 금액은 1년간 대부료로 본 구에서 지정하는 은행예금 계좌로 계약 체결시 지정한 기한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 (재해복구회비 납부) 임차인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금 지급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받은 재산의 면적에 대하여 재해복구회비(화재보험)부담액을 매년 3월 31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임대재산의 보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6 조 (임대재산의 부과금) 임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7 조 (임차인의 행위제한) 임차인은 본 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임대 용도를 변경하는 것
- 2. 임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 3. 임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 4. 임대받은 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 8 조 (임대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 구는 임차인에 대하여 언제 든지 임대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 2. 임대재산의 관리를 해태 하거나 임대조건을 위배한 때
- 3. 기타 본 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 9 조 (임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임대조건의 위반으로 임대를 취소함으로 써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임대취소 요청) 임차인이 임대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임대취소 원서를 본 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임차자 선정에드는 비용 및 임대료에 의한 본 구의 재정수입에 대한 손해는 임차자가 부담한다.

제 11 조 (사용재산의 반환) 임대기간이 끝났거나 임대취소로 인하여 임대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구의 직원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당해 공유재산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수 없다.

제 12 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임차인은 본 임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구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 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3 조 (임대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 본 임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 만료 시 본 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임차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5 조 (어구의 해석) 본 계약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구와 임차인의 협의 후 본 구의 결정에 의한다.

제 16 조 (특수조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자 또는 출자한 대부는 불가하며

임차인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건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전 본 구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기간만료 또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본 구에게 임대건물을 반환 할 시에는 시설비용 및 권리금 등을 주장하지 못하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특 약 사 항

- 1. 재해복구회비 / 매년 기준에 의거 부과
- 2. 본 건물의 전용 임대 부분인 벽체, 바닥, 천장수장 공사 및 조명기구 부착 등 인테리어 공사와 개별 냉난방 설비공사는 임차인이 별도로 시행하여야 한다.